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문진석・이재관・안태준

송옥주 • 강준현 • 문금주

이연희 · 한정애 · 이언주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, 우리나라가 대한민 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,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(외국기의 게양 금지)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국경일에 일장 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국빈 방문, 국제경기 및 국제회의 개최, 주한외국공 관(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)의 외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 장(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은 제1항을 위반하여 국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한 자에게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.
 - ③ 시장등은 제2항의 명령을 받고도 외국기를 계속하여 게양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할 수있다.
- 제5조(과태료)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명령에 불응하여 외국 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(외국기의 게양 금지) ① 누
	구든지 제2조에 따른 국경일에
	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
	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국
	빈 방문, 국제경기 및 국제회의
	개최, 주한외국공관(대사관과
	영사관을 포함한다)의 외국기
	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경우는 제외한다.
	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	지사・시장・군수 또는 자치구
	의 구청장(이하 "시장등"이라
	한다)은 제1항을 위반하여 국
	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한 자에
	게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
	<u>할 수 있다.</u>
	③ 시장등은 제2항의 명령을
	받고도 외국기를 계속하여 게
	양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
	으로 하여금 그 외국기를 제거
	하도록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5조(과태료) ① 제4조제2항에

따른 시장등의 명령에 불응하여 외국기를 제거하지 아니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·징수한다.